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www.chahongroom.com

최초등록일: 2017. 8. 25

최종등록일: 2024. 4. 26

chpartners@naver.com

차홍륜

정 보 공 개 서

(주)씨에이치인터내셔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4. 26

(주)씨에이치인터내셔널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3길 42(논현동)

대표전화 02-6004-2285

대표팩스 02-3445-8524

가맹사업담당부서 : 02-6004-2285(가맹본부)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씨에이치인터내셔널	차홍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3길 42(논현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 7. 6.	2012. 7. 6.	한필수	02-3445-8523	02-3445-8524
	법인등록번호	110111-4910182	사업자등록번호	211-88-8036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경험이 있는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사내이사	한필수	차홍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길 42(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필수	02-3445-8523	02-3445-852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배우자 CDO	김효숙	차홍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길 42(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필수	02-3445-8523	02-3445-852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전무이사	송영재	차홍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길 42(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한필수	02-3445-8523	02-3445-852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차홍룸”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차홍룸	헤어디자이너의 이름에서 유래
상 호	차홍룸 ○○점	
상표(서비스표)	차홍 CHAHONG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36897
	차홍룸 CHAHONG ROOM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27068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차홍룸을 영업표지로 하는 미용업을 영업으로 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주식회사 씨에이치인터내셔널, 이하“갑”이라 함)와 가맹점사업자, 이하 “을”이라 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 권리 의무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계약당사자의 지위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

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의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②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 ③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등의 공급
- ④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⑥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⑦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 ⑧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관리 및 감독,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한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 ⑨ 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등을 이유로한 보복조치금지

4) 가맹점사업자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①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②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③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④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⑤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⑥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⑦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⑧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⑨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⑩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⑪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⑫영업표지에 대한 제 3 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vat 제외,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5,763,267	3,467,925	2,295,342	4,773,960	-719,782	-711,699
2022년	5,483,101	3,111,847	2,371,254	4,815,807	45,705	75,912
2023년	5,355,362	2,888,529	2,466,833	5,333,452	211,205	95,578

그 근거자료는 별지목록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③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	----	------	------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한필수	대표이사 사내이사	2012.7.~현재	(주) 씨에이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김효숙	CDO 배우자	2012.7.~현재	(주) 씨에이치인터내셔널 CDO / 차홍 본인	마케팅/디자인총괄
	송영재	전무	2017.2 ~현재	(주) 씨에이치인터내셔널 전무이사	가맹사업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1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업종	사업 내용
가맹본부	(주)씨에이치 인터내셔널	가맹사업 경영	2013.3.21 ~ 현재	미용	차홍아르더(등록번호20130100215) 미용실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사내이사)	한필수	상동	2013.3.21 ~ 현재	미용	차홍아르더(등록번호20130100215) 미용실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CDO)	김효숙	상동	2013.3.21 ~ 현재	미용	차홍아르더(등록번호20130100215) 미용실 가맹사업경영
특수관계인 (전무이사)	송영재	상동	2017.2.13 ~ 현재	미용	차홍아르더(등록번호20130100215) 미용실 가맹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차홍 (상표권)	차홍 도형	2011.06.15. 출원 2012.07.31. 등록	41-2011-0017312	한필수 (당사대표자)	2032. 7. 31.
			41-0236897		
차홍룸 (상표권)	차홍룸 도형	2017.05.22 출원 2018. 02.01 등록	40-2017-0062620	한필수 (당사대표자)	2028. 2. 1
			40-1327068		

그 외의 상표 및 서비스표는 다음과 같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차홍 (상표권)	차홍 도형	2012.10.25. 출원 2013.10.04. 등록	제2012-0066447호	한필수 (당사대표자)	2033. 10. 4
			제40-0998891호		
차홍 (상표권)	차홍 도형	2013.03.29. 출원 2014.05.02. 등록	제2013-0019818호	한필수 (당사대표자)	2034. 5. 2.
			제40-1035338호		
차홍 (상표권)	차홍 도형	2011.10.12. 출원 2013.01.30. 등록	제2011-0004619호	한필수 (당사대표자)	2033. 1. 30.
			제45-0043399호		

당사의 영업표지 및 상표는 '차홍룸' 이나 "차홍" 과 "룸" 에 대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영업표지중 [차홍]의 상표권은 당사가 가맹사업중인 [차홍아르더]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차홍]에 대한 상표권의 [차홍룸]에서의 사용은 독점적사용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차홍룸] 가맹사업 현황

1. [차홍룸]을 시작한 날: 2017년 8월 25일

2. [차홍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씨에이치인터내셔널	차홍룸	한필수	2017년 8월 25일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3길42(논현동)

3. [차홍룸] 업종분류표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업 종	
주식회사 씨에이치인터내셔널	차홍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	미용서비스, 미용제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차홍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 .12.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0	20	-	20	20	-	22	22	-

서울	20	20	-	20	20	-	22	22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차홍륜] 가맹점 수

. 가맹점 현황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19	1				20
2022	20	1		1		20
2023	20	2				22

차홍름 가맹점현황은 별첨) 5 를 참고바랍니다.

6. [차홍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씨에이치 인터내셔널	차홍아르더	20130100215	미용	3	3	3
특수관계인	한필수	상동	20130100215	미용			
특수관계인	김효숙	상동	20130100215	미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지역 ^④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						비고 ^⑤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⑥	22	1,817,410	26,087	2,888,233	41,778	1,090,159	14,008	
서울	22	1,817,410	26,087	2,888,233	41,778	1,090,159	14,008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매출액은 12개월 이상 영업중인 20개점포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의 근거로(6개월 미만점포 2개점 제외) 기재하였습니다.

* 매출액산정 엑셀자료 첨부

8. [차홍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차홍름] 가맹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수	평균 영업기간
----	-----------	---------

2023년	22개점	1,614일(4.4년)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현재까지 당사는 [차홍륜]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는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차홍륜]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1]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3,514	113,514		
광고 홍보	비공개	113,514	113,514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차홍륜 가맹사업관련 광고.홍보비 및 판촉비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손익계산서 상의 기재한 금액은 해당 가맹사업 외의 광고.홍보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하나은행	압구정 지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0 용기빌딩	02- 3446-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에스크로 예치금융회사 : 하나은행 압구정지점

- 사업자명 : (주)씨에이치인터내셔널
- 사업자번호 : 211 - 88 - 80368
- 브랜드명 : 차홍륜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에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등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차홍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가맹비 + 오픈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3,000]				
가맹비	33,000 (VAT포함)	계약체결과 동시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가맹점 모집 / 영업개시를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 한 기준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공 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 하는 경우, 사후 가입 비로 전환)
오픈교육비	10,000 (VAT없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10,000 (VAT없음)	계약 체결 즉시	상품/자재대금, 로열티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는 금액으로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때 상계후 정산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53,000
가맹비	33,000 (VAT포함)
오픈교육비	10,000 (VAT없음)
계약이행보증금	10,000 (VAT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지목록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평수 : 50평, 단위 : 천원, vat제외)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00,000			가맹점 규모와 사양에 따라 변동
필수설비(정착물)	미지정협력업체	100,000	설치 7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가구, 쇼파, 경대, 시술의자, 샴푸도기등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미지정협력업체	150,0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착수 전 7일 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3.3㎡당 250만원) 사양 외 추가공사부분은 인테리어회사와 개별논의 필요함

					* 별도공사(간판, 철거, 외부공사, 냉난방기 등) 제외 금액이며, 본사 감리비 5% 포함 금액임.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당사	50,000	물품 공급 7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가맹점 규모와 선택에 따라 변동, 별지 목록 2 참조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권장 사항)	미지정 해당 거래처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 전 계약 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소모품비, 판촉활동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당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아님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매장 규모 50평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사양의 선택, 매장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점포 내장 공사 비용 [3.3㎡(평)당 250만원]을 제외한 필수 설비(정착물) 및 별도 공사 비용 [3.3㎡(평)당 250만원] + 상품(제품)의 비용은 [3.3㎡(평)당 100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매장의 형태, 사양 및 수량의 선택 등으로 인해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가맹본부 (전화: 02-6004-2285)	시장조사 → 가맹희망자(인성, 투자비, 희망지역) 선정 → 시장분석 → 최적입지/조건도출 → 임대차계약(가맹희망자) → 가맹계약(예비가맹점주) → 인테리어공사 → 오픈교육(본사) → 그랜드오픈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표준화된 매뉴얼 및 시술기술의 통일성 및 수준유지를 위하여 가맹점 채용인원에 대하여는 본사의 테스트 및 교육결과에 따른 직급을 부여하며 당사는 채용인원에 대한 본사의 급여시스템을 권장합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교육 이수한 자, 미용사면허 소지,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용사 면허증 소지자(단 보조직원은 불요),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차홍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별지목록2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8) 가맹금 분할납부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vat제외,천 원)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 건	반환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매출액구간별 로열티 %> ~ 50,000천원 : 2.0% 50,000~ 100,000천원 : 1.5% 100,000~150,000천원 : 1% 150,000 ~ : 0.5%	익월 10일	-	-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또는 판촉업체	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가맹사 업자와 가맹본부가 협의하여 분담하며 일반판촉행사일 경우 50%씩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의 동 의가 있을시 전체 진행하며	개별 청구	-	-	할인비용이나경품·기 념품등의 비용은 가 맹사업자 부담 / 전국통일적 팜플렛· 전단·리플렛·카달 로그 등의 제작비용 가맹본부 부담등 행 사성격에 따라협의 진행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또는 광고업체	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가맹사 업자와 가맹본부가 협의하여 분담하며 가맹사업자의 매출비 율에 따라 산정하며 가맹점모 집광고가 포함될 경우, 가맹본부 의 비율은 75%, 100%부담을 원 칙으로 진행		-	-	전국단위 광고 본사 50% 가맹점 50% / 가맹점모집광고 본사 100% / 지점지역광고 가맹점100%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사항 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공사범위에 따라	교체, 변경 전 1일	-	-	부득이한경우변경될수 있으며,교체비용은 당사자의구책사유등을 고려하여합리적으로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협력업체	공사범위에 따라	교체, 보수 전 3일	-	-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36,37페이지참조
POS 사용료	협력업체	19,900원	다음 월 5일			핸드SOS 프로그램
지연이자	당 사	연18%	지급기일 의 다음날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교육비	당 사	무상정기/특별교육비	교육실시 7일전			(별지 4 참조) *교육과정/인원등에 따라 교육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재료비 등)의 실비비용이 청구 될수 있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
의 매출액에서 해당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오차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차액가맹금 증빙양식 (전자파일 별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계약시, 당사에게 지급하는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어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① 가맹점 운영권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영업양도, 대리행사 하게 하거나 위탁, 담보설정, 동업,

임대차, 전전세 (이하 "영업양도 등"이라함)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위 제1항의 승인은 영업양도 등이 있기 전 1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당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비 및 보증금을 귀하로부터 양수하되, 영업양도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이수의무를 위한 교육비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당사는 영업양수인에게 귀하의 잔여계약 기간을 인정하되, 영업양수인이 당사와 귀하의 잔여계약 기간이 아닌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⑥ 귀하는 원활한 영업양도 등을 위해 양수인 등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⑧ 귀하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⑨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⑩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가맹점영업을 계속하기에 부적당한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계약해지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는 상속인에게 보증금 및 합의해지의 경우 합의금(가맹계약서 제15조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⑪ 상속인은 가맹비 및 보증금을 귀하로부터 상속받되,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의무 이수를 위한 소정의 교육비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차홍룸"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철회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는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당사소유의 모든 집기, 설비를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자에게营业을 이전하거나 고객관리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실상 영업을 양도하는 행위 및 기타 이에 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반품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차홍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권장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별지목록2 과 같습니다.

[귀하가 별지목록 2에 기재된 물품을 당사가 권장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목록 2 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차홍룸]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가맹본부 (주)CHI의 대표이사 한필수와 특수관계인(주)CH코스매틱의 대표이사 한필수는 동일인입니다.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 1) 당사는 [차홍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판매장려금 관련 기재사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상기표와 같이 로레알 코리아로부터 매출액대비 판매촉진서비스료 10% ~ 13%, 유럽연수 10명이상, 제품지원 6,000천원, 살롱 이벤트지원(현금) 40,000천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의 경제적이익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위의 금액은 1년치(1월~12월) 예상총구매액의 월평균 예상하한선을 기준으로 당사와 로레알코리아 및 주)씨에이치코스메틱 의 물품공급거래계약상의 판매촉진장려금 기준임으로 현재 정확한 총구매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금년말 회계정산후에 산정가능합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지목록 3 (미용서비스/미용제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 및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2회이상 서면시정요구 3회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는 당사가 공급한 물품을 타 브랜드의 가맹점,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인근 차홍룸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

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 업계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표준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별지목록 3 참조).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별첨[1]과 같이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 ② 가맹본부는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하여야 한다.

-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미용업	차홍아르더 차홍룸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로 설정 {단, 역세권(각출구),아파트(1000세대 이상)단지,백화점,대형마트,대형쇼핑몰,종합병원, 대학가 중 2개 이상이 있고 기존가맹사업자의	계약체결시 도로 및 상권에 따라 지도로 별도 표기하며 왕복 10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은 상권범위에서 제외하며, 특수상권(백화점,대형마트,공항,호텔등)

월평균매출이 1억 이상인 수요가 많은 독립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독립상권에 한하여 기존 가맹사업자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 1개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수 있다}	은 상권범위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함.
--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 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 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 히 변동되는 경우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 지역 재조정 완료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 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차홍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과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비중

(단위 : vat제외, 천원)

2023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금액	37,039,286	-	-	-
비율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판매상품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2023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상품수	384개	-
비율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차홍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1.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하기 계약갱신거절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귀하의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제 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만료전 180 일 부터 90 일 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귀하가 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당사나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다.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로열티/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점포·설비,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을 지키지않은 경우
5.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갑"이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싼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해지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 가맹계약서 13조 제11항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귀하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19조 1항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위 기간 중 귀하가 해당 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본 계약상 각 조항을 위반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나. 당사의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기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다. 귀하가 당사의 영업방침에 불응하거나 재정적 곤란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당사와 계속 거래가 심히 곤란한 경우 라.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에게 2회이상 물품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마. 귀하가 당사의 경영지원에 따른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중요한 계약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바.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사. 당사의 관리/감독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아. 귀하가 2회 이상 정기납입금 등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 귀하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차. 귀하가 당사와의 협의 없이 매장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카. 귀하가 당사와 약정한 광고 또는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귀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을 하지 않는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합니다 라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사유 ● 가맹계약서 13조 제 11항 제2호 각 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9조 2항
합의 해지	계약조문
당사와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가맹비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19조 2항

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시	23조 4항
○ 가맹사업상 중대하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	23조 4항

계약수정사유 발생시 수정계약서(안)을 귀하에게 서면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받아 계약조건을 수정할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2개월전에 양도신청 → 당사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문의: 당사(02-3445-8528)

	운영권 이전 완료	
--	-----------	--

- ① 가맹점 운영권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사람에게 영업양도, 대리행사 하게 하거나 위탁, 담보설정, 동업, 임대차, 전전세 (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함)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위 당사의 승인은 영업양도 등이 있기 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귀하의 당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비 및 보증금을 귀하로부터 양수하되, 영업양도에 따라 당사에게 초래 된 행정적 실비 및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이수 의무를 위한 교육비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당사는 영업양수인에게 귀하의 잔여계약 기간을 인정하되, 영업양수인이 당사와 귀하의 잔여계약 기간이 아닌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2조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는 원활한 영업양도 등을 위해 양수인 등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 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 담보설정, 동업, 임대차, 전전세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가맹점영업을 계속 하기에 부적당한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계약해지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영업을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는 상속인에게 보증금 및 합의해지의 경우 합의금(가맹계약서 제15조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가맹계약서 제2조의 가맹비 및 보증금을 귀하로부터 상속받되,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의무 이수를 위한 소정의 교육비는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의 영업노하우, 운영시스템, 디자인 등은 당사가 상당한 시간에 시간과 비용, 연구 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계약의 존속 중에 귀하에게 직접 또는 귀하의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게 하거나 가맹사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 해지 및 종료 후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당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차홍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영업시간(10:00 ~ 19:00, 일 9시간) 및 영업일수(주 6일 이상)를 준수합니다. 단, 가맹점의 특수성에 따라 당사와 귀하가 협의 할 수 있으며, 법정공휴일에 따른 연휴는 예외로 합니다.
2.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일정기간 위 1.을 준수할 수 없거나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특정일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영업일의 단축을 요청할수 있으며 영업시간,영업일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	----------	----

15명 ~ 20명이상	직접 근무	관리자, 종업원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차홍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광고 성격 ^②	부담비율		분담 절차 ^④	비고 ^⑤
		본사부담 ^③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출하가 50%	판촉물 출하가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1. 당사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광고사항을 정하여 전국 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가맹 사업자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50%, 해당가맹점사업자가 50%를 부담(브랜드 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당사 75% 가맹점사업자 25%부담)하고 사업자 간의 개별 분담액은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브랜드 광고가 없는 가맹점 모집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100%를 부담하고, 브랜드광고가 없는 가맹점 지역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100% 부담합니다.

3. 광고 및 판촉활동은 귀하는 물론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활동으로써 행사동의절차를 거친후 전체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 동의시 전체적용 합니다.

4. 당사는 당해 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귀하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음 분기 첫달의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귀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홍보·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홍보.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문안, 방법,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광고나 홍보 및 판촉활동은 할수 없으며, 가맹본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영업비밀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매장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귀하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종료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③ 귀하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 ③ "을"이 계약해지 종료 시 제15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 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50만원의 지체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④ "을"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800 만원을 지급한다.
- ⑤ "을"이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위약별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 ⑥ "을"이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위약별로 3,0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⑦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요구)

을 자점매입할 경우 위약별로 7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⑧ 본 조의 경우 “갑”의 지급 요청일에 “을”이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을”은 연 이율 18%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추정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11p~15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계약체결 14일전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0개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전체) - 입지선정 및 입지사업성검토, 사업준비 등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후 계약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5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35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5~32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1~3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9~5	
교육 실시	- 점포오픈운영교육 실시(2주)	D-24~3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	----------------	------	--------------	----

점포의시설장비 인테리 러 등의 노후화 가 객관적으로안정되 는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인하여 가 맹사업의통일성을 유 지하기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 저한 지장을 주 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비접기의 교체비용 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 는알짜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일성 과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공 사를 실시함에따라소 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 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있는서류첨부) →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합의가있는 경우1년의범 위내에서분할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한다 <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있는서류첨부) → 3차에 걸 쳐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30% 2차:1차지급일로 부터60일 이내 총 부담액의30% 3 차:2차지급일로부터60일 이내 총 부담액의40%)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해지 ·영업양도·합하는 경우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 담액은지급하지 아 나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가맹본부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적인 경영지도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지도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해야하고 이 경우 경영지도계획서에는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차홍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차홍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지목록 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차홍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없음)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시 신규 오픈교육	2주	10,000천원	최초 개점전 필수이수 (디자이너,주니어,CS관리자)
정기교육	월 1회	-	권장(운영매뉴얼)
특별교육	필요시	-	권장(운영매뉴얼)

* 교육과정은 당사의 교육방침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과목등에 따라 재료비등 실비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개점시 신규오픈교육은 가맹계약을 맺는 귀하와 종업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점 종업원이나 관리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종업원이나 관리자가 당사가 정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헤어서비스 및

신기술, 트렌드에 뒤처지고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 할 수 있으며, 본사운영매뉴얼에 정한 기준에 따라 승급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해당없음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6004-228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ch-international.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 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목록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지목록 2

1) 주요품목(상위 50%품목)상하한가 (단위 : 원, vat 제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위 가액은 시장가격과 가맹점의 규모, 필요수량, 종업원수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2) 물품구입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지목록 3

1) 차홍룸 가격표

(단위:원)

PRICE TABLE				
	디자이너	실장	부원장	원장
커트	55,000	66,000	77,000	88,000
히팅펌	300,000	320,000	340,000	360,000
콜드펌	200,000	220,000	240,000	260,000
드라이	30,000	35,000	40,000	45,000
부분펌 (커트제외)	앞머리커트 20,000 / 사이드펌 25,000 ~ 50,000 뿌리볼륨펌 110,000 / 앞머리펌 90,000			
업두	세미업두 60,000			
케어	헤어 170,000			
염색(기장)	130,000 / 160,000 / 190,000 / 220,000			

별지목록 4

교육프로그램 - 주니어

1-1 헤어 파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위 교육 일정은 s/s, f/w 트렌드 행사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은 영상 시청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차홍아르더는 전 과정 본사교육으로 진행하며, 차홍룸은 본사(본), 지점(지), 교육으로 구분 짓는다.
- 본사(본) 교육은 '본사 아카데미', 지점(지) 교육은 '각 지점'에서 진행한다.
- 과제는 교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준 미달 시 재 제출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 제출 시 감점)
- 문화의 날: 6개월 동안 총 4회를 진행한다. (지점별 조회 일정에 맞춰서 진행)

1-1 헤어 파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위 교육 일정은 s/s, f/w 트렌드 행사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은 영상 시청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차홍아르더는 전 과정 본사교육으로 진행하며, 차홍룸은 본사(본), 지점(지), 교육으로 구분 짓는다.
- 본사(본) 교육은 '본사 아카데미', 지점(지) 교육은 '각 지점'에서 진행한다.
- 과제는 교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준 미달 시 재 제출 요청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 제출 시 감점)
- 문화의 날: 6개월 동안 총 4회를 진행한다. (지점별 조회 일정에 맞춰서 진행)

1. 디플로마 종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강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3. 디플로마 취득 안내

1단계: 제출서류

1) 신청서

- 아카데미 디플로마 취득을 위한 지정 신청원서와 함께 신청비 50,000원 입금 (심사비 포함)

2) 추천서

- 각 지점 원장님의 사인이 담긴 추천서를 제출

3) 업무 숙련도

- 가. 고객분석관리표 (6개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나. 전문지식시험(이론테스트)

- 서비스 교재, 차홍아카데미 7요소, 차홍 코스메틱 3과목에 대한 이론을 테스트한다.

- 기출문제는 아카데미에서 출제한다.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합격
- 서비스 교재
 - : 각 지점에서 고객응대 및 시술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 : 영상 및 매뉴얼 복을 중심으로 한다.
- 차홍아카데미 7요소
 - : 'CHAHONG ACADEMY TOTAL HAIR MANUAL'에 있는 커트, 펌, 블로우 드라이 업무에 한하여 각 카테고리별 7요소의 내용을 다룬다.
- 차홍 코스메틱
 - : 아카데미에서 공유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아카데미 게시판 이용)
 - : 각 제품의 성분 및 특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다. 인문학 수강증명서

- 인문학 강의는 유료 강의에 한하며, 강의 등록서(영수증, 수료증 등)를 제출한다.
- ▶ 리포트 제출은 수기로만 진행하며, 1회 수강 시 A4 기준으로 2장 이상 제출한다.

4) 포트폴리오

가. 목적

- 스타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로 승급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
- 승급 희망자에 한해 커트 + 업스타일의 모든 시안을 작성

나. 제출

- 아카데미 지정일 사전 공지 (1월, 7월)
- 인트라넷에 첨부된 양식에 맞춰 이미지 추가 및 작성한다.
- 희망자에 한하여 6개월 마다 제출

다. 주의사항

- Stylist 교육의 복습 개념으로 진행
- 지점 강의 시 사용한 가발은 포트폴리오 용으로 사용 불가
- 포트폴리오 제출용 가발 추가 진행
- 평가의 객관성 동질성을 위하여 아카데미 지정물품만(가발) 사용가능

라. 주의사항(취득불가사유)

- 사진 반복 사용
 - : 1년 2회 포트폴리오 진행 중 동일한 과목 사진을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 사진 도용 :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
- 공지 숙지 미달로 인한 미 제출 :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2단계: 세미나

1) 목적

- 차홍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로 승급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

2) 진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4. 기타

1) 신청비

- 디플로마 취득 신청비 5만원

2) 교육비

- 차홍아카데미 PIS 내부 교육비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 5. 가맹점현황 리스트

(단위: 천원, vat 제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끝”